

CEO
Report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2011. 8

김 대 환 · 류 건 식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1
I. 검토배경	4
II.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변화	5
1.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5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7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	9
4. 퇴직연금시장 전체	11
III.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영방안	14
1. 보험상품의 활용	14
2. 모집조직의 개선	16
3. 서비스의 차별화	17
4. 자산운용능력 및 이미지 제고	19
5. 복수사용자제도의 활용	21
IV. 맺음말 및 과제	23
참고문헌	27

요약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 개정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계층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취업근로자 대비 32.8%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임의가입 방식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하여 소득흐름이 고르지 못한 계층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제공함.
 - 이직 시 적립금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하는 동시에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앞으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적립금 수준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최소적립금 수준을 60%로 유지함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이 단기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임.

○ 「근퇴법」 개정의 영향이 아닌 제도전환에 따른 적립금이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투명한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며, 담보대출의 허용은 퇴직연금시장의 위축으로 연계되지 않을 것임.

○ 퇴직연금 모집 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타 금융업권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보험상품을 퇴직연금의 운용상품과 연계할 수 있음.

- 특히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산 소진기에 활용도가 높은 연금 상품을 개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활용해야 함.

- 모집조직 측면에서는 전문 법인영업 및 개인영업 조직을 육성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콜센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이번 「근퇴법」 개정안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함.
 - 퇴직연금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하여 전문 퇴직연금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운용상품으로 디폴트(default)옵션이 가미된 라이프사이클 펀드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복수사용자제도는 실제 가입과정에서 연합형 및 종합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연합형의 경우 상위 기업, 조합, 협회, 상위 노조를 상대로 영업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형의 경우 산업별 및 업종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 및 퇴직연금규약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임.

■ 투명한 시장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 및 감독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모집조직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가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표사용자의 악의적인 권한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I 검토배경

■ 퇴직연금제도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근퇴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급권 보호, 적립금의 연속성,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시장거래질서, 가입의 유연성 등이 전면 보완되어 「근퇴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상당할 것임.

○ 이번 국회를 통과한 「근퇴법」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시행됨.

■ 이에 보험회사는 「근퇴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근퇴법」 개정안이 확정급여형보다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를 고려한 운영방안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근퇴법」 개정안이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여러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는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한 퇴직연금시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후,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운영방안 등을 모색하여 보고자 함.

○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변화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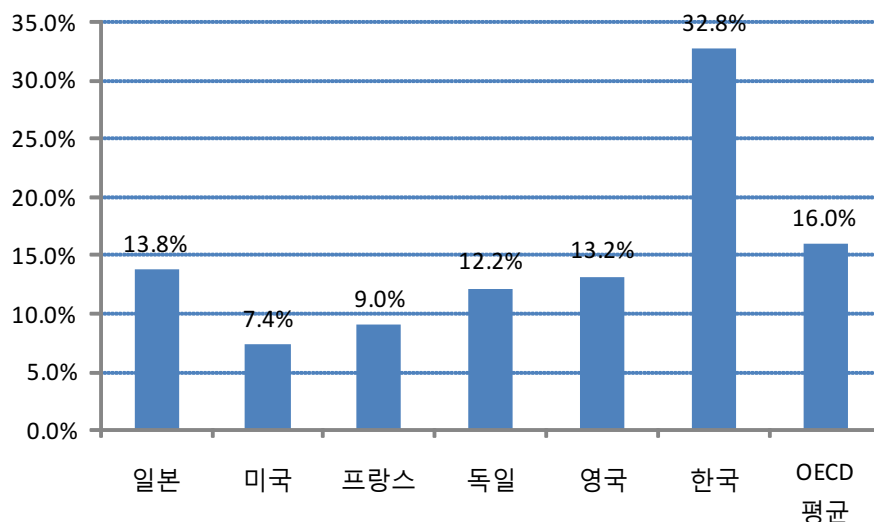
Ⅱ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변화

1.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과 같은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확대가 기대됨.

- 「근퇴법」의 개정은 자영업자와 같은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여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임.
- 우리나라 전체 취업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규모는 OECD 평균치 16.0%의 두 배 수준인 32.8%에 이르고 있음.

〈그림 1〉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율 비교



주: 2006년 기준으로 작성된 OECD 자료를 인용함.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 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 개인형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예상됨.

-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약 57%에 이르고 있으며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경우 가입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표 1〉 자영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의향

(N=320,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320)	56.6	43.4
성별	남자	(187)	62.6	37.4
	여자	(133)	48.1	51.9
연령	20대	(43)	25.6	74.4
	30대	(119)	60.5	39.5
	40대 이상	(158)	62.0	38.0
월소득	200만 원 이하	(77)	61.0	39.0
	201만~300만 원	(110)	51.8	48.2
	301만 원 이상	(133)	57.9	42.1

주: 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보험연구원이 2010년 12월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또한 이직 시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여 적립금 이전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직장 이직 시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연금재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도록 규정함.

-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인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6.7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간

구분	평균근속기간		
	2007. 3	2008. 3	2009. 8
< 임금근로자 >	4년 6개월	4년 8개월	4년 11개월
정 규 직	5년 11개월	6년 1개월	6년 7개월
비정규직	2년 2개월	2년 2개월	1년 9개월

자료: 통계청,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각 년도.

■ 특히 「근퇴법」 개정안은 퇴직연금가입자가 추가로 개인형 퇴직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추가납입에 따른 시장 확대가 예상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가입 근로자도 자기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노후소득재원이 마련되도록 하고 있음.

○ 그동안 「근퇴법」에서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노후소득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함.

■ 결국, 자영인의 가입허용, 이직 적립금의 가입의무화,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가입허용 조치 등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됨.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 근로자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퇴법」 개정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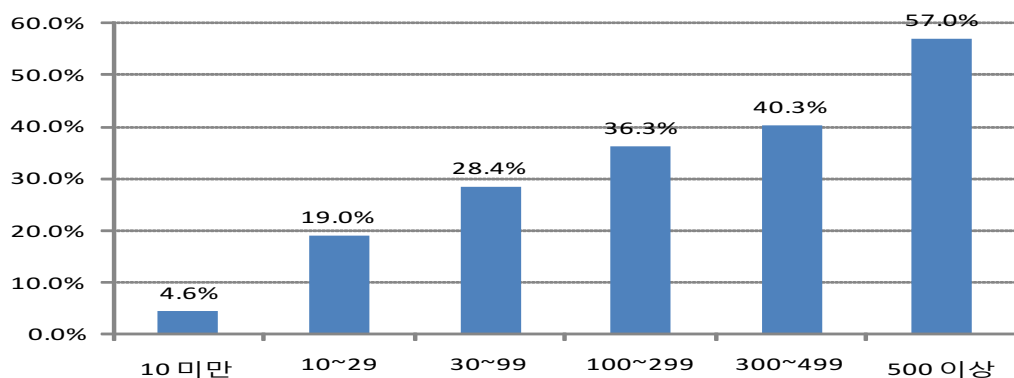
○ 그 이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설정하기 보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안정적인 노후소득재원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확정금리형 중심의 자산운용을 선택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처럼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 이에 반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자신이 직접 자산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임.

■ 또한 복수사용자 제도의 허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중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복잡한 가입절차와 운용관리 비용의 부담으로 퇴직연금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성장하여 왔음.
- 「근퇴법」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 마련을 위해 다수의 기업이 동시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복수사용자 제도를 허용하였음.

〈그림 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2011. 4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2011. 5), 「퇴직연금 도입현황」.

- 이러한 복수사용자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만 허용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복수사용자제도가 이미 도입된 일본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복수사용자제도의 도입 기업의 비율이 62%이며 적립금의 비율도 58%에 이름.¹⁾
 - 향후 퇴직연금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중소형 사업장이 복수 사용자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급격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임.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

- 최소적립수준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재무건전성 규제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위축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 그 이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 적립수준을 종전 수준인 기준책임준비금²⁾의 6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최소적립수준을 단기간에 인상할 경우 사용자의 급격한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 측면에서 볼 때 종전과 같은 최소적립수준 유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택의 유인효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메리트가 유지되는 효과를 가져옴.

1) 2007년 5월 기준 자료이며, 김대환·류건식·이상우(2011) 자료를 인용함.

2)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소 적립금수준을 검증하여 적정수준이 90% 미달 시 사용자는 그 부족분을 해소하고, 적립수준이 100% 상회 시 장래부담금과 상계하도록 규정함.

○ 이러한 적기시정조치 신설은 근로자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오히려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되는 적립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존재함.

○ 2011년 5월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정기납입분+추가부담금+제도전환분)³⁾ 40조 6천억 원 중에서 제도전환에 따른 적립금 비중이 18조 5천억 원으로 45.5%에 이름.

〈표 3〉 퇴직연금 적립금 구성

(단위: 억 원, %)

구분	DB형 금액	DC형 금액	IRA기업형 금액	IRA개인형 금액	계	
					금액	비중
정기납입분	146,141	63,860	5,593	—	215,595	64.3
추가부담분	—	2,246	3,261	—	5,507	1.6
제도전환분	133,071	11,946	1,093	38,354	184,464	55.0
적립금운용손익	15,002	5,446	509	1,870	22,827	6.8
급부지급분	54,324	22,769	5,040	11,089	93,223	27.8
적립금총계	239,890	60,729	5,417	29,136	335,173	100.0

자료: 고용노동부(2011. 7), 「퇴직연금 도입현황」.

3) 적립금 운용손익과 퇴직금 지급액을 제외한 순수한 적립금액임.

- 제도전환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 중 72.1%가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4. 퇴직연금시장 전체

- 먼저 중간정산의 원칙적 금지는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역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임.
 - 그동안 잦은 중간정산을 통해 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함.
 - 다만, 가입자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위해 중간정산의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고 있음.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기타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립금의 인출을 허용하고 있음.
 -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허용되어 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퇴직연금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적립금에 대한 담보대출의 허용은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와 퇴직연금중심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정착시킬 것임.

○ 적립금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적립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허용함.

-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 내에서 허용되며 일정기한 이내에 대출금을 적립금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함.

■ 셋째,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자동 설정 및 도입 간소화 조치는 퇴직금제도의 도입감소와 퇴직연금의 가입률 제고로 이어질 것임.

○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신설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의 도입을 제한하고 퇴직연금제도를 1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신설사업장에 한하여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엄격한 절차대신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됨.

■ 넷째,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사업자의 위탁근거 마련은 개인영업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 퇴직연금시장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요건을 신설함.

○ 모집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은 개인영업 중심으로 영업패턴을 변화시켜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계층을 퇴직연금제도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줄 것임.

■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한 근거법 마련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퇴직연금시장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근퇴법」 개정안은 사업자의 수탁자책임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시켜 시장거래질서가 투명해지고 서비스의 차별화가 유도될 것으로 보임.

Ⅲ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영방안

1. 보험상품의 활용

■ 보험회사는 다른 사업자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보험상품을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험상품을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혼합 번들링(mixed bundling) 방식⁴⁾으로 연계하여 영업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기존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보험상품을 연계시키는 마케팅 전략은 판매 극대화뿐만 아니라 가입유치 이후 유지율 및 수익성을 개선시킬 것임.

■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보험상품 중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됨.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별로 보험상품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4) 혼합번들링 전략은 기존 퇴직연금 운용상품과 보험상품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동시에 각각의 상품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임.

〈표 4〉 보험상품 연계 방안

구분		보험상품을 활용한 번들링 상품 전략	
DB 및 DC의 기업대상	생보	단체상해보험	
	손보	단체상해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단체종합보험 등	
DC 및 IRP의 근로자대상	생보	실손의료보험, 정액형건강보험	종신보험, CI 등
	손보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등

주: 1) CI는 제3보험에 해당하여 손해보험회사도 영위할 수 있으나 생명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생명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으로 분류함.

2) DB(Defined Benefit)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함.

■ 또한 보험회사는 연금지급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자산운용을 통해 적립금을 쌓는 자산축적기는 결국 은퇴 이후 적립된 자산을 소진하는 자산소진기와 연계될 수밖에 없음.

○ 특히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 소득을 평활화(smoothing)하려는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의 목표 소득대체율은 40%이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은 40%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추정됨.⁵⁾

○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상품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퇴직연금 유치단계에서부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립금 수급 이후에 연금지급을 제공하는 상품개발과 함께 적립단계에서부터 연금상품을 편입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5) 목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간을 가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는 27년에 불과함.

2. 모집조직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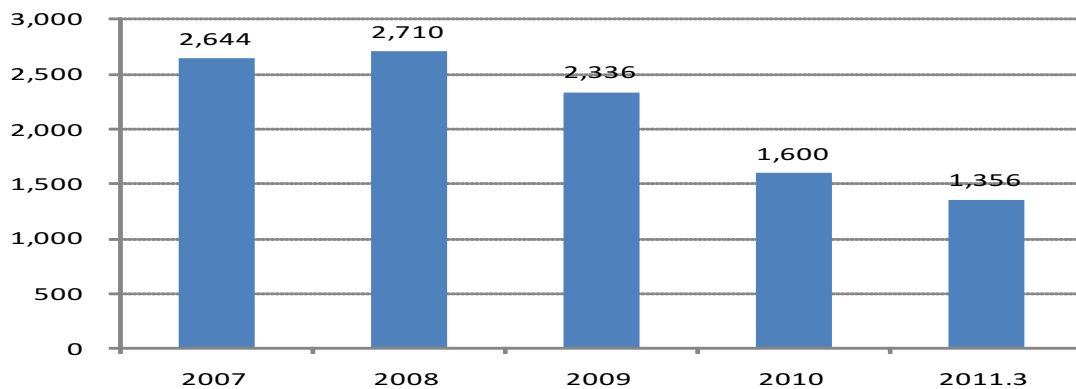
■ 전문 법인영업 조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시장에, 중·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법정 퇴직금제도 하에서 퇴직보험·신탁에 가입했던 대기업들이 적립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위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즉 퇴직보험·신탁 적립금이 2008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나머지 1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은 퇴직보험·신탁과 운용형태가 유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임.

〈그림 3〉 퇴직보험·신탁 적립금 추이

(단위: 100억 원)



자료: 고용노동부(2011. 7), 「퇴직연금 도입현황」.

○ 따라서 퇴직보험·신탁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에 특화된 법인영업 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퇴직연금 전문 개인영업 조직의 육성을 통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에 적극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유지방법 측면에서 기존 보험회사의 영업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험회사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즉, 운용자산에 보험상품을 연계하고 기존 개인영업조직을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영업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개인영업조직도 보장성 보험시장이 점차 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과 연계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개인영업조직에도 새로운 수익원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개인영업조직이 영업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선지급 수수료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서비스의 차별화

■ 보험회사의 핵심경쟁력인 서비스제공 능력을 보다 차별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가입 전에 해당 기업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금계리 서비스를 통한 퇴직연금제도별 비용 분석과 근로자의 퇴직급여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투자교육, 투자정보 제공, 퇴직급여 회계처리 방법 안내, 재무컨설팅 및 은퇴관련 서비스 등 사후관리 서비스의 개발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변화 등으로 인해 서비스중심으로 사업자의 경쟁력이 평가될 전망이므로 서비스 차별화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필요함.

○ 또한 투자성과의 확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변경시의 수익률 변화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확정급여형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익원의 다각화 차원에서 투자관련 서비스의 차별화가 요구됨.

■ 특히 퇴직연금가입자 중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는 계층과 이직자 및 퇴직자의 적립금 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전문 콜센터 운영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입자가 이직 또는 퇴직하는 시점에 접촉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개별 퇴직자산이 보험회사에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⁶⁾

- 개인형 퇴직연금의 신규 가입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퇴직자산의 규모가 큰 이직자 및 퇴직자 유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콜센터와 같은 판매채널은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는 계층의 유치, 그리고 이직자 및 퇴직자의 적립금 유치에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6) 상대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활용도가 높겠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이직 및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활용될 수 있음.

4. 자산운용능력 및 이미지 제고

- 「근퇴법」 개정안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운용능력의 제고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가 양적규제에서 점차 자율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안정적인 수익률제고를 위한 자산운용능력 배양노력이 중요함.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에 대한 역량 강화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전문 퇴직연금기관의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전문 퇴직연금기관의 설립을 통해 운용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 퇴직연금기관 설립시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5〉 전문 퇴직연금기관 설립 방안

구분	투자비용(리스크)	수익	대상 보험사
자체 설립	높음	높음	대형사
그룹차원 설립	중간	중간	중소형사 및 대형사
타 금융회사와 공동설립	낮음	낮음	중소형사 및 대형사

○ 또한 다른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자산운용에 대한 역량과 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다른 금융기관과 권소시엄 방식으로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회사의 운용상품 풀(pool)에 다른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포함하여 자산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는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 펀드형 상품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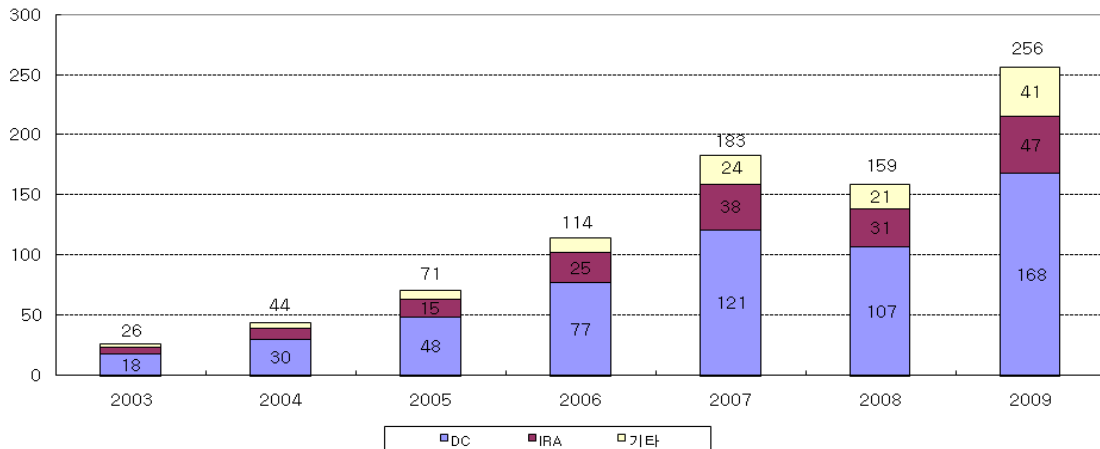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미국에서도 최근 라이프사이클 펀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 다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임.
- 2009년 기준 미국의 전체 라이프사이클펀드 자산 중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⁷⁾의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5.6%, 18.4%를 차지할 정도로 라이프사이클펀드에서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역할은 절대적임.

7) 우리나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와 비슷한 제도임.

〈그림 4〉 라이프사이클펀드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ICI(2010. 5), "The U.S. Retirement Market, 2009", Vol.19, No.3.

- 우리나라의 경우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퇴직 연금사업자가 부재한 만큼 보험회사는 동 운용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시장을 미연에 선점해 둘 필요가 있음.
- 특히, 가입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율이 자동적으로 감소하는 디폴트(default) 옵션을 라이프사이클 펀드에 가미하여 자산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복수사용자제도의 활용

- 복수사용자제도는 실제 가입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 각 형태별로 특성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복수사용자제도는 일본의 경우처럼 연합형과 종합형으로 형태가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합형과 종합형을 구분하지 않고 복수사용자제도로 통합함.

- 실제로 가입과정에서 연합형과 종합형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동 제도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연합형은 일반적으로 자본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형태이며, 종합형은 자본관계가 없지만 동종업계 또는 동일 지역 내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도입하는 형태임.
- 연합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종합형은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될 것임.
- 연합형은 대표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자본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영업을 상위 기업, 조합, 협회, 상위 노조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종합형은 산업별 및 업종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 및 퇴직연금을 미연에 개발하여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장 선점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복수사용자제도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입의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그룹형태로 가입하므로 적립금 규모면에서 시장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복수사용자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이나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기 어려워 유지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IV 맺음말 및 과제

■ 퇴직연금시장은 제도 변화에 민감한 시장인 만큼 이번 「근퇴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근퇴법」 개정안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 「근퇴법」 개정안 실시에 따른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미연에 운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과거에는 대기업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향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도 강할 것으로 판단됨.

○ 제도전환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즉,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을 가미한 퇴직연금 운용상품 제공으로 상품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 개인영업조직 신설,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근퇴법」 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비하여 전문 퇴직연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산운용 역량 제고가 요구됨.

○ 특히 안전성 위주의 실적배당형 상품,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개발 등을 통해 운용능력을 제고하고 복수사용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당국은 「근퇴법」 개정 이후에도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첫째, 복수사용자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으므로 대표사용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 불합리한 추가이익 제공 등에 철저한 감시가 요구됨.
 - 복수사용자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자칫 대표사용자의 과도한 권한행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다수의 기업이 그룹을 이루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만큼 복수 사용자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그룹의 규모가 크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사용자의 권한행사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가입자가 부담해야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신 책임지거나 불합리한 추가 이익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감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근퇴법」 개정안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적립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립수준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급보장 장치의 도입이 요구됨.
 - 최소적립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할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적립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를 도입하여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⁸⁾

- 확정급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충분한 지급보장차원에서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미국, 호주 등 선진국 수준으로 퇴직연금 세제혜택을 대폭 증대하고 일시금 세제혜택은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연령 등 가입자 속성별로 세제혜택 수준을 차등화하고 일시금에 대한 정률비율공제⁹⁾ 및 연분연승법¹⁰⁾ 적용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확정급여형의 재정검증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적립과 부족 시 적기시정조치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적립금 부족 시의 제재조치를 엄격히 규정하고 적립금의 상한한도 등을 설정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연금계리사 등 제3자적 감시기능 장치를 마련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섯째,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감독 강화와 불완전 판매 경감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8) 최소적립수준이 100%까지 상향조정되더라도 수급권 보호가 되지 않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김대환·류건식(2011.1)의 pp.39~40을 참고.

9) 퇴직급여액(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금액의 40%에 대해 공제를 적용함.

10) 퇴직급여액에서 정률비율공제액과 근무연수별 공제액을 순차로 차감하여 구한 과세표준을 근무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연분연승법은 세액을 낮추는 기능을 함.

- 「근퇴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충분히 감독될 수 있도록 인력의 확충 및 감독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관련 규정에 불완전 판매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 등)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1.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노동부(2011. 7), 「퇴직연금 도입현황」.
- 김대환·류건식(2011. 7), 「근퇴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KIRI Weekly』 이슈, 보험연구원.
- 김대환·류건식(2011. 1), 「퇴직연금 지급보장체계 특징비교 및 개선과제」, 『보험동향』 2010년 겨울호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
여형퇴직연금 운영방안」,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 출간예정.
- 김대환·이상우·김혜란(2010. 4),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CEO Report』, 보험연구원.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 출간예정.
- 류건식·이상우(2009. 10),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CEO
Report』, 보험연구원.
- 통계청,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각 년도.
- ICI(2010. 5), "The U.S. Retirement Market, 2009", Vol.19, No.3.

저 자 약 력

김 대 환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dhkim@kiri.or.kr)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CEO Report 2011-0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전략과 과제

발 행 일	2011년 8월
발 행 인	김 대 식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3775-902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